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시부터 즉시	배포	
<b>책임자</b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석란(02-2100-2680)	<b>담당자</b>	차영호 사무관 (02-2100-2683)	
	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1본부장 손호근(02-3149-0351)		최경자 위원 (02-3149-0357)	
	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2본부장 한진희(02-3149-0361)		김선용 위원 (02-3149-0352)	
			김학관 위원 (02-3149-0362)	
이명하 위원 (02-3149-0367)				
박인숙 위원 (02-3149-0363)				

## 제 목 :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

□ 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 정은보)는 2017. 2. 28.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항남 등 5개사에 대하여 **증권발행제한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**를 하였음

(붙임)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	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 <a href="http://www.fss.or.kr">http://www.fss.or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	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겠습니다
---	---	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

(붙임)

##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4차 증권선물위원회, 2017.2.28. 의결)

(감리조사1본부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적사항	조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(주)대호하이텍</b>  결산기 : 2008.09.30. 2009.09.30. 2010.09.30. 2011.09.30. 2012.12.31. 2013.12.31.  비상장법인  업종: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※ (주)대호하이텍이 '15.5.1. (주)대호 차량을 합병함	<b>【회사】</b>  <b>【(주)대호하이텍(합병후 존속회사)】</b>  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 - 회사(합병전 (주)대호산업)는 특수관계자인 (주)대호차량과 기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허위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와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(단위 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'08년 (31기)</th> <th>'09년 (32기)</th> <th>'10년 (33기)</th> <th>'11년 (34기)</th> <th>'12년 (27기)</th> <th>'13년 (37기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매출</td> <td>14,966</td> <td>14,308</td> <td>16,884</td> <td>8,193</td> <td>5,144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매출원가</td> <td>12,573</td> <td>13,011</td> <td>15,676</td> <td>7,176</td> <td>5,228</td> <td>△1,982</td> </tr> <tr> <td>당기순이익</td> <td>2,383</td> <td>1,297</td> <td>1,208</td> <td>1,017</td> <td>△84</td> <td>1,962</td> </tr> <tr> <td>자기자본</td> <td>2,383</td> <td>3,680</td> <td>4,888</td> <td>5,905</td> <td>3,965</td> <td>5,92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② 매출 및 매출원가(수익인식) 과소계상(제34기:8,507백만원)  - 회사(합병전 (주)대호산업)는 0000 등 8개사로부터 매입하여 특수관계자인 (주)000000에 판매한 상품은 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증개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수수료수익만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 8,507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[2008.9.30.] 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664 → △1,719 자기자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,831 → △552  [2009.9.30.] 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80 → △717 자기자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,411 → △1,269  [2010.9.30.] 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67 → △741 자기자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,878 → △2,010  [2011.9.30.] 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△775 → △1,792 자기자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59 → △5,346	구분	'08년 (31기)	'09년 (32기)	'10년 (33기)	'11년 (34기)	'12년 (27기)	'13년 (37기)	매출	14,966	14,308	16,884	8,193	5,144	-	매출원가	12,573	13,011	15,676	7,176	5,228	△1,982	당기순이익	2,383	1,297	1,208	1,017	△84	1,962	자기자본	2,383	3,680	4,888	5,905	3,965	5,927	<b>회 사 :</b>  - 증권발행제한 8월 (2017.2.28.~2017.10.27.)  - 감사인지정 2년 (2017.1.1.~2018.12.31.)  ※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(前재무담당 임원)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  ※ (주)대호하이텍이 (주)대호차량을 합병('15.5.1.)함에 따라 (주)대호차량에 부과된 조치를 (주)대호하이텍이 승계  ※ 검찰통보 조치는 등 건이 검찰의 수사 종료 후 법원 판결이 확정(2심 '15.10.29.)된 사항이므로 생략함  * 국세청 세무조사('13.8.26.~'13.10.31.) 결과 발견된 사항을 국세청이 검찰에 통보
구분	'08년 (31기)	'09년 (32기)	'10년 (33기)	'11년 (34기)	'12년 (27기)	'13년 (37기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출	14,966	14,308	16,884	8,193	5,14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출원가	12,573	13,011	15,676	7,176	5,228	△1,98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당기순이익	2,383	1,297	1,208	1,017	△84	1,96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기자본	2,383	3,680	4,888	5,905	3,965	5,92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[2012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209 → 293 자기자본 38,617 → 34,652</p> <p>[2013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△209 → △2,171 자기자본 38,861 → 32,934</p> <p><b>【(주)대호차량(합병후 소멸회사)】</b></p> <p>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(주)대호하이텍(합병전 (주)대호산업)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허위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와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'08년 (16기)</th> <th>'09년 (17기)</th> <th>'10년 (18기)</th> <th>'11년 (19기)</th> <th>'12년 (20기)</th> <th>'13년 (21기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매출</td> <td>17,002</td> <td>17,052</td> <td>14,591</td> <td>5,668</td> <td>6,337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매출원가</td> <td>14,784</td> <td>18,910</td> <td>13,680</td> <td>5,778</td> <td>6,068</td> <td>1,288</td> </tr> <tr> <td>당기순이익</td> <td>2,218</td> <td>△1,858</td> <td>901</td> <td>△110</td> <td>269</td> <td>△1,288</td> </tr> <tr> <td>자기자본</td> <td>3,083</td> <td>1,225</td> <td>2,126</td> <td>2,016</td> <td>2,285</td> <td>99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2008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△6,056 → △8,274 자기자본 6,913 → 3,830</p> <p>[2009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1,597 → 3,455 자기자본 10,852 → 9,627</p> <p>[2010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2,598 → 1,697 자기자본 13,450 → 11,324</p> <p>[2011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786 → 896 자기자본 14,236 → 12,220</p> <p>[2012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514 → 245 자기자본 14,749 → 12,464</p> <p>[2013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△3,116 → △1,828 자기자본 11,157 → 10,160</p>	구 분	'08년 (16기)	'09년 (17기)	'10년 (18기)	'11년 (19기)	'12년 (20기)	'13년 (21기)	매출	17,002	17,052	14,591	5,668	6,337	-	매출원가	14,784	18,910	13,680	5,778	6,068	1,288	당기순이익	2,218	△1,858	901	△110	269	△1,288	자기자본	3,083	1,225	2,126	2,016	2,285	997	
구 분	'08년 (16기)	'09년 (17기)	'10년 (18기)	'11년 (19기)	'12년 (20기)	'13년 (21기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출	17,002	17,052	14,591	5,668	6,337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출원가	14,784	18,910	13,680	5,778	6,068	1,28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당기순이익	2,218	△1,858	901	△110	269	△1,28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기자본	3,083	1,225	2,126	2,016	2,285	9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(감리조사1본부)

(단위 : 백만원)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젬앤컴퍼니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결산기 : 2013.06.30. 2014.06.30. 2015.06.30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기업경영과 재무 관련 자문 및 도소매업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증권발행제한 4월 (2017.2.28.~2017.6.27.)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 (2017.7.1.~2019.6.30.)</p> <p>① 유가증권 담보제공내용(담보한도액) 주식 미기재 (제9기 : 59,695백만원, 제10기 : 37,702백만원, 제11기 : 31,83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(주)OOOOOO의 전환사채 발행과 회사의 차입금 등을 위하여 회사 보유 (주)OOOOOO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식으로 공시하면서 약정한 담보한도액에 대한 공시를 누락함</p> <p>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(자금차입) 주식 미기재 (제9기 : 3,667백만원, 제10기 : 8,395백만원, 제11기 : 1,285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기말잔액을 주식으로 공시하면서 기중거래액에 대한 공시를 누락함</p> <p>[제9기(2012.7.1.~2013.6.30.)~제11기(2014.7.1.~2015.6.30.)]</p> <p>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</p>

(감리조사2본부)

(단위 : 백만원)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																
(주)빌트모아 결산기 : 2012.12.31. 2013.12.31. 비상장법인 업종 : 남성정장복, 의류 제조업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(’12년 3,026백만원, ’13년 4,413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적용시 시가(순실현가능가치)를 잘못 산정·적용함으로써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함</p> <p>② 매출과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(’12년 4,627백만원, ’13년 3,21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위탁대리점과 대형할인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매출을 대리점 등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여 매출액과 지급수수료를 각각 과소계상함</p> <p>[2012.12.31.]</p> <table border="0"> <tr> <td>당기순이익</td> <td>247</td> <td>→</td> <td>△182</td> </tr> <tr> <td>자기자본</td> <td>7,500</td> <td>→</td> <td>4,474</td> </tr> </table> <p>[2013.12.31.]</p> <table border="0"> <tr> <td>당기순이익</td> <td>△429</td> <td>→</td> <td>△1,816</td> </tr> <tr> <td>자기자본</td> <td>7,071</td> <td>→</td> <td>2,658</td> </tr> </table>	당기순이익	247	→	△182	자기자본	7,500	→	4,474	당기순이익	△429	→	△1,816	자기자본	7,071	→	2,658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증권발행제한 4월 (2017.2.28.~2017.6.27.)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 (2017.1.1.~2018.12.31.)</p>
당기순이익	247	→	△182															
자기자본	7,500	→	4,474															
당기순이익	△429	→	△1,816															
자기자본	7,071	→	2,658															

(감리조사2본부)

(단위 : 백만원)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																								
조일공업(주) 결산기 : 2011.12.31. 2012.12.31. 2013.12.31. 비상장법인 업종 :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식 과소기재 (’11년 3,938백만원, ’12년 7,361백만원, ’13년 7,16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식에 과소기재함</p> <p>②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(’11년 3,117백만원, ’12년 1,744백만원, ’13년 1,373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2011년 3,117백만원, 2012년 1,373백만원 과소계상하여,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2011년에 3,117백만원 과대계상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,744백만원과 1,373백만원을 과소계상함</p> <p>③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(’11년 40,136백만원, ’12년 39,790백만원, ’13년 32,32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도금업체로부터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·납품하는 거래가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,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</p> <p>[2011.12.31.]</p> <table border="0"> <tr> <td>당기순이익</td> <td>400</td> <td>→</td> <td>△2,717</td> </tr> <tr> <td>자기자본</td> <td>6,956</td> <td>→</td> <td>3,839</td> </tr> </table> <p>[2012.12.31.]</p> <table border="0"> <tr> <td>당기순이익</td> <td>510</td> <td>→</td> <td>2,254</td> </tr> <tr> <td>자기자본</td> <td>10,138</td> <td>→</td> <td>8,765</td> </tr> </table> <p>[2013.12.31.]</p> <table border="0"> <tr> <td>당기순이익</td> <td>564</td> <td>→</td> <td>1,937</td> </tr> <tr> <td>자기자본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변동없음</td> </tr> </table>	당기순이익	400	→	△2,717	자기자본	6,956	→	3,839	당기순이익	510	→	2,254	자기자본	10,138	→	8,765	당기순이익	564	→	1,937	자기자본			변동없음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증권발행제한 4월 (2017.2.28.~2017.6.27.)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 (2017.1.1.~2018.12.31.)</p>
당기순이익	400	→	△2,717																							
자기자본	6,956	→	3,839																							
당기순이익	510	→	2,254																							
자기자본	10,138	→	8,765																							
당기순이익	564	→	1,937																							
자기자본			변동없음																							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b>(주)항남</b> 결산기 : 2010.12.31. 2011.12.31. 2012.12.31. 2013.12.31. 비상장법인 업종: 전자부품 및 모터코어제조업	<b>【회사】</b> <b>【개별재무제표】</b> ①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오류 (계정분류 오류 : '10년~'12년 1,850백만원, '13년 5,112백만원, 자기자본 과소계상 : '10년 19,349백만원, '11년 20,156백만원, '12년 16,686백만원, '13년 13,740백만원) - 회사는 중국소재 피투자회사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투자주식 미계상, 일부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미인식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등으로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고,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잘못 분류함 ②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식 미기재 ('10년 10,674백만원, '11년 13,920백만원, '12년 7,760백만원, '13년 7,629백만원) -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[2010.12.31.] 당기순이익 982 → 1,922 자기자본 8,692 → 28,041 [2011.12.31.] 당기순이익 1,201 → 831 자기자본 9,893 → 30,049 [2012.12.31.] 당기순이익 663 → △1,622 자기자본 9,516 → 26,202 [2013.12.31.] 당기순이익 2,034 → 2,151 자기자본 14,812 → 28,552 <b>【연결재무제표】</b>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오류 (수익·비용 과소계상 : '10년 17,640백만원, '11년 21,741백만원, '12년 22,914백만원, '13년 23,966백만원, 자기자본 과소계상 : '10년 7,301백만원, '11년 7,233백만원, '12년 6,370백만원, '13년 4,551백만원) - 회사는 해외종속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됨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미포함	<b>회 사 :</b> - 증권발행제한 10월 (2017.2.28.~2017.12.27.) - 감사인지정 3년 (2017.1.1.~2019.12.31.) ※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(前대표이사)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

②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식 미기재 ('10년 6,720백만원, '11년 6,954백만원, '12년 6,378백만원, '13년 6,270백만원) -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[2010.12.31.] 당기순이익 1,357 → 2,338 자기자본 22,867 → 30,168 [2011.12.31.] 당기순이익 1,293 → 862 자기자본 25,100 → 32,333 [2012.12.31.] 당기순이익 △1,117 → △1,592 자기자본 22,011 → 28,381 [2013.12.31.] 당기순이익 2,097 → 2,183 자기자본 26,239 → 30,790	
--	--

## ※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

### 감사인 지정

-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

###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

-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**舊**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.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(증권), 유가증권(증권)의 사모발행(채권자 출자전환 포함),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

### 과징금

-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**舊** 증권거래법,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

###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

-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(100%이내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

### 등록취소 건의

-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

### 직무정지 건의

-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

###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
- 주권상장법인(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)·'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'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

### 주권상장(코스닥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
- 주권상장법인(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)·'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'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

###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

-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